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이너스(-) 계약운임 관련 조치 계획 알림

1. 우리부에서는 건전한 해상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 처리요령'을 개선·시행('16.3.11.)한 바 있습니다.

2. 동 요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는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나, 3개월 이상의 계약운임에 대하여는 미리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 공표운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위 공표 제외를 위한 신고운임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운임은 인정하되, '16.4월 이후 계약분의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운임에 대하여는 불승인 할 계획임을 기 공지한 바 있습니다.('16.3.31. '운임공표제도 개선·시행 관련 FAQ')

4. 더불어, 해운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운임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미 신고하여 승인 받은 선사에서도 계약갱신 등을 통하여 '16.6.30.까지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위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57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한국선주협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

행정사무관 이정섭 과장 전결 2016. 5. 11.
전재우

협조자

시행 해운정책과-2919 (2016. 5. 11.)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18 팩스번호 044-200-5729 / ljs777@korea.kr /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



수신
(경유)

제목 **운임공표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1. 우리부에서는 해운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항 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을 개선·시행(‘16.3.11.)한 바 있습니다.

2. 동 요령에 따라 ‘16.4월부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운임공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한·중·일·러(극동)는 4월, 한·동남아는 5월, 그 외 원양항로는 6월 중 운임을 공표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3. 그러나 4월 중 운임공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귀 사는 운임공표 대상항로에서 화물을 수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경고조치 하니 ‘16.5.27까지 운임을 공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일 내 운임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 동법 제59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운임공표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2016. 5. 23.
협조자			
시행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27	팩스번호 044-200-5729	/ key10000@korea.kr	/ 비공개(7)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International Shipping Agencies Association of Korea

수 신 : 각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동남아항로 운임공표제 시행 협조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3191(2016. 5. 23)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임공표제의 공정성 및 실효성 회복을 위하여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시행('16. 3. 11) 하고, 한-중일러(극동)는 4월, 한-동남아는 5월, 그 외 원양항로는 6월 중 운임을 공표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한-동남아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는 '16. 5월 중 운임을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운임공표시스템 (www.sis.go.kr) 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5. 더불어, 운임공표 불이행, 공표운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해운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하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하오니 대형물류주선업체, 경쟁 선사 등의 해운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등 공정한 해운시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

시행 국해협-94호 (2016. 5. 24)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511호(광화문플래티넘) 우 : 03170

TEL : 02-734-1531 / FAX : 02-734-6200 / <http://www.isaak.or.kr> @-mail : isaak@isaak.or.kr